

(보호자 분께)

인정 기준액을 초과해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 및 필요 서류에 대하여

다음 이유에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액을 초과하여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(심사 결과 필요 서류를 제출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.)

	이유	필요 서류(사본 가능)
가	<p>실업 중이기 때문에 2025년의 소득으로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. (대상 실업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의 12개월간) ※ 정년퇴직은 실업 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. ※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<p>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·고령자 고용보험 수급자격자증 등 (수급 기간이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) 또는 그 기간에 걸쳐있는 것</p> <p>※ 고용보험을 수급받지 않고 있는 경우 개인 사업의 개업·폐업 등 신고서(신고의 구분이 폐업, 폐업일의 기재가 있는 것)</p>
나	<p>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이기 때문에 2025년의 소득으로는 참고가 되지 않는다. (대상 휴직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 사이의 12개월간) ※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/p>	<p>다음 2가지 서류 (휴직 기간이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, 또는 그 기간에 걸쳐 있는 것)</p> <p>(1) 근무처가 발행한 '휴직증명서' 등 ※ 휴직(예정) 기간이 기재된 것</p> <p>(2) 의사의 진단서 ※ 장기간에 걸쳐 취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는 것</p>
다	<p>(1) 2025년도의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 기한 이후에 확정신고를 하고, 그 의료비 공제액이 인정 기준 초과액과 동일액이거나 상회한다 (대상 기간: 2025년 1월 1일 ~ 2025년 12월 31일)</p> <p>(2) 2026년 1월 1일~2026년 12월 31일 사이의 의료비 합계에서 10만 원을 뺀 금액이 2025년도 의료비 공제액을 상회할 때, 그 금액이 인정 기준 초과액과 동일액이거나 상회한다 (대상 기간: 2026년 1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)</p> <p>※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만을 고려합니다. ※ 이유 발생 상황에 따라 인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※ 오른쪽 (1)과 (2)는 각각 제출할 수 있으나, 채워지는 것보다 많은 의료비가 발생한 한쪽만 해당합니다.</p>	<p>(1)에 해당하는 경우 확정신고의 결과가 반영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(과세액(비과세) 증명서 등) ※ 2025년에 든 의료비에 대해서는 직접 의료비 공제 절차를 진행하시고, 의료비 공제가 반영된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(과세액(비과세) 증명서 등)를 제출해 주십시오. ※ 2025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의료비 공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, 2026년 1월 1일 시점에서 가와사키시에 주민등록이 있었던 분은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(과세액(비과세) 증명서)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</p> <p>(2)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 기간의 의료비 액수를 알 수 있는 서류의 사본(건강보험조합 등에서 송부한 의료비 등의 안내 또는 의료비 영수증 등) ※ 입원 급부금과 출산 일시금 등의 보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. ※ 심사에 사용한 필요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, 금후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 등의 예정이 있는 분은 반드시 복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.</p>
라	<p>시정촌민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을 받았다. ※ 토지, 건물이나 주식 등 자산 매각과 양도에 따른 손실 계산에 의한 경우와 주택 취득 공제는 제외합니다. ※ 2004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세대 전원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.</p>	<p>다음 서류 중 하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비과세 증명서 ·면제 증명서 ·과세액 증명서(감면받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것)
마	<p>개인사업세 감면 적용을 받았다. ※ 적용 이유는 재해 피해를 본 경우에 한정됩니다.</p>	<p>개인사업세를 감면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(감면 사유가 기재된 것)</p>
바	<p>고정자산세 감면 적용을 받았다. ※ 적용 이유는 천재지변(지진 재해, 풍수해 등) 및 인위적 재해(화재 등)의 경우만</p>	<p>고정자산 과세대장 기재 사항 증명서(감면 사유가 기재된 것)</p>
사	<p>(1) 국민연금보험료의 감면 적용을 받았다. (2)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감면 또는 징수 유예의 적용을 받았다. ※ 2004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세대 전원(동거 중인 분(주민표의 세대가 다른 경우도 포함) 또는 단신 부임 등으로 동거는 하지 않으나 동일 생계를 유지하는 분)이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. ※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경감은 대상 외입니다.</p>	<p>(1)의 경우 (다음 서류 중 하나) ※ 대상 면제 기간: 2026년 7월 ~ 2026년 12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연금보험료 면제·납부 유예 신청 승인 통지서 ·국민연금보험료 면제 이유 해당 통지서 <p>(2)의 경우 (다음 서류 중 하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국민건강보험료 감면 승인 결정 통지서 ·국민건강보험료 징수 유예 승인 결정 통지서
아	<p>생활복지자금을 대출받았다. (대출 기간 또는 결정일: 2026년 1월 1일 ~ 2027년 3월 31일)</p>	<p>생활복지자금 대출 결정 통지서(긴급 소액 자금 포함)</p>
자	<p>직업안정소 등록 일용직 근로자이다. ※ 세대에서 수입이 있는 사람이 복수 있는 경우에는 수입이 있는 사람 전원의 증명이 필요합니다.</p>	<p>일용 노동 피보험자 수첩</p>
차	<p>정시제 고등학교의 4학년생 등 2008년 4월 1일 이전에 태어난 고등학생이 세대원 중에 있다. ※ 고등학교 등 취학비를 기준액에 추가함으로써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</p>	<p>재학증명서(대상이 되는 고등학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것) 또는 학생증 등</p>

※ 라부터 아에 대해서는 주시요
연도(2026년도)